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3. 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2.26. 최은하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2021.2.26.

다. 상정일자: 제2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1.3.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최은하 의원】

가. 제안이유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에 대해 「지방자치법」은 200명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조정(안 제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개정조례안은 최은하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¹⁾에 200명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 감사청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1항에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200인 이상’에서‘1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를 함.

1)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는 주민의 수를 조례에 위임된 요건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현행 ‘200인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하향하여 개정하는 것은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